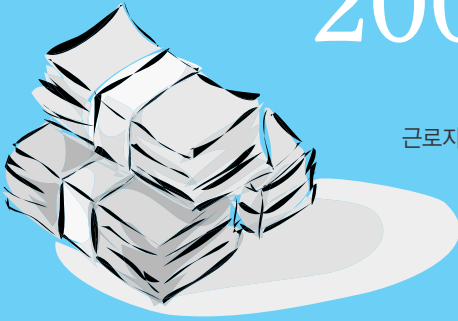


2006년 연말정산



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'연말정산 시즌'이 돌아왔다. 그러나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직장인의 절반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. 또한 '소득공제를 이용해 세테크를 하고 있나'라는 질문에 '하고 있다'는 응답은 17.6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'유리지갑'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.

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(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)

종 전	개 정
소득공제액 :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공제 (한도 : 총급여액×20%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)	소득공제액 : 총급여액의 1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를 공제 (한도 : 총급여액×20%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)

□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(조세특례제한법 86의 2)

종 전	개 정
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	연금저축불입액과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

□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(소득세법시행령 16)

종 전	개 정
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· 국외지역 근무자 - 월150만원	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· 비과세 금액 축소 - 월 150만원 → 월 100만원 - 외항·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(월 150만원)

□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 2)

종 전	개 정
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	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

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조정(소득세법 52①)

종 전	개 정
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· 매년 1월 ~ 12월 지출분	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· 전년 12월 ~ 금년 11월 지출분

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. 1. 1 ~ 2006. 11. 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

□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(소득세법시행규칙 58)

종 전	개 정
의료비영수증 ·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	의료비영수증 ·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(소득세법시행규칙 58④호)

종 전	개 정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건물등기부등본	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건물등기부등본 -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(소득세법 52)

종 전	개 정
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	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(소득세법 52)

종 전	개 정
공제대상자 : 세대주인 근로자 -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*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-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* 20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	공제대상자 : 세대주인 근로자 -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*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-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* 20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

※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거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야 함

※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

■ 연말정산 간소화(소득세법시행령 113 ②, 소득세법시행령 216 ③, 소득세법시행규칙 58 ⑤)

종 전	개 정
암호화코드, 복사방지마크 등 위·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-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직업훈련비, 현금영수증, 의료비 일부(보험적용분)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·출력	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·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(퇴직연금소득공제) -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(보험료공제) -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(의료비공제 장애인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) - 영유아보육법,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(보육시설, 유치원, 학교)에 지출한 비용(교육비공제) - 직업훈련비용(교육비공제) - 개인연금저축불입액(개인연금저축공제) - 연금저축불입액(연금저축공제) 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(퇴직연금소득공제) 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(신용카드소득공제)

자료 출처 : 한국납세자연맹(www.koreatax.org/tax/)

